

[별표 6] <개정 2010.7.12>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액

위 반 행 위	해당법 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기 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 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이 책임질 사유로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의 하자 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 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법 제82조제1 항제1호	4개 월	8000만원	4개 월	8000만원	4개 월	8000만원
2.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이 책임질 사유로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의 하자 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법 제82조제1 항제1호	3개 월	6000만원	3개 월	6000만원	3개 월	6000만원
3.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 설공사실적의 연평균 액이 제7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제79조제2 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는 제외한다.	법 제82조제1 항제2호	1개 월	2000만원	1개 월	2000만원	1개 월	2000만원
4.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 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 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때	법 제82조 제1 항제2호의2	2개 월	4000만원	3개 월	6000만원	3개 월	6000만원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기	법 제82조 제1	4개 월		4개 월		4개 월	

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항제2호의3						
6.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3호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의2, 제4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4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호·제6호·제8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8.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가목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9.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나목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다목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라목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12.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 기타 의무를 위	법 제82조제1항제5호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반한 때	다목·라목						
13.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마목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1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82조제1항제6호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5개월	1억원	5개월	1억원	5개월	1억원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3개월	8000만원	3개월	8000만원	3개월	8000만원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2개월	6000만원	2개월	6000만원	2개월	6000만원
1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1년	5억원	1년	5억원	1년	5억원
1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8개월	3억원	8개월	3억원	8개월	3억원
17.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6개월	2억원	6개월	2억원	6개월	2억원
18.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4개월	1억원	4개월	1억원	4개월	1억원
19.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2개월	5천만원	2개월	5천만원	2개월	5천만원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영업정 지 기 간	과징금의 비율(%)			
			5 천 만 원 까 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 제 2 항 제 1 호	8월	30	24	16	8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 2 항 제 1 호의2	6월	24	18	12	6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 2 항 제 2 호	8월	30	24	16	8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 2 항 제 2 호	6월	24	18	12	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때	법 제82조 제 2 항 제 2 호	6월	24	18	12	6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 2 항 제 2 호	4월	16	12	8	4
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 2 항 제 2 호	4월	16	12	8	4
7.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법 제82조	2월	8	6	4	2

위반한 때	제 2 항 제 3 호					
7. 삭제 <2005.6.30>						
8.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 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 은 때	법 제82조 제 2 항 제 4 호	6월	24	18	12	6

비 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3조의 규정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83조제2호	6월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83조제8호	6월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법 제83조제9호	1년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법 제83조제10호	6월
5.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83조제12호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8월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6월

때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4월 2월
--	--	--------------

비 고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수액이 위 표 중 제5호 라목의 위반행위
란에 해당되는 때로서 최근 5년간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
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다.
2. 위 표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
우
 -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
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
은 경우
 -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
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
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